



2026년 교육감배
하이스타 축구리그
대회 규정

목 차

- 제1조 명칭
- 제2조 용어의 정의
- 제3조 대회의 주최/주관/후원
- 제4조 대회 일정
- 제5조 참가자격
- 제6조 경기규칙
- 제7조 승자결정 방식
- 제8조 승점
- 제9조 순위결정
- 제10조 출전 자격
- 제11조 선수단 안전
- 제12조 의료진
- 제13조 출전선수명단 제출 의무
- 제14조 선수교체
- 제15조 유니폼 및 장비
- 제16조 경기일정 준수
- 제17조 경기시간
- 제18조 경기관계자 미팅
- 제19조 영상 녹화 기기 사용
- 제20조 리그 중단 및 경기중지 결정
- 제21조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기 취소·중지 및 재경기
- 제22조 패배로 간주되는 경우
- 제23조 대회 중 잔여경기 포기
- 제24조 팀, 지도교사 및 선수에 대한 제재
- 제25조 제소
- 제26조 상벌
- 제27조 기타사항

제1조 명칭

본 대회명은 「2026년 교육감배 하이스타 축구리그」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대회요강에서 "대회"라 함은 예선과 본선을 모두 말하며, "학교"라함은 대회 신청을 한 인천광역시교육청 관내 고등학교를, "팀"이라 함은 해당 학교의 팀을 지칭한다.

제3조 대회의 주최/주관/후원

공식 경기는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유나이티드 프로축구단 주최(대회를 총괄하여 책임지는 자)하고, 주식회사 스포츠클럽이 주관(주최자의 위임을 받아 대회를 운영하는 자)한다.

인천광역시축구협회가 후원한다.

제4조 대회 일정

본 대회는 하단 표에 맞춰 진행되며, 경기일정(대진)은 주최측이 정한 경기일정표에 의한다.

구분	일정	내용	비고
참가팀 접수	4월 13~24일	대회 참가팀 접수 및 조편성	- 4월 29일 무작위 추첨 조편성
예선전	5~8월 (주말 및 공휴일 진행)	조별예선 *최소 2경기 진행	- 중립구장 - 단판 진행
본선 토너먼트	9~10월 (주말진행)	본선 토너먼트	- 중립구장 - 단판진행 (전후반 동점시 승부차기)
결승전	10월 9일 (금) *한글날	결승전 및 시상식 진행	- 결승 인천축구전용경기장(예정) - 단판진행 (전후반 동점시 승부차기)

※ 대내외적 환경 변화에 따라 대회 일정 변경 가능성 있음.

제5조 참가자격

본 대회를 참가하기 위해 학교는 참가 신청한 팀(지도교사, 선수) 중 아래와 같이 구단에서 「예선~본선 참가 자격」을 부여한 팀에 한하여 참가할 수 있으며, 다음의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1. 참가 자격

- ① 2026년 학교스포츠클럽 등록(neis)을 한 재학생(2008년생까지)
- ② 참가선수는 학교별 최대 18인으로 등록할 수 있다.
- ③ 대회에 참가한 모든 선수는 이중 등록을 할 수 없다.

2. 참가 선수 제한

- ① 2025년 1월 1일 이후 대한축구협회 및 각국 축구협회에 학생선수로 등록하지 않은 학생
※대한축구협회 1종 전문선수 등록 학생만 해당 및 2종 동호인 등록 선수는 참가 가능

3. 참가 선수 교체

① 기간 : 예선전 시작전 가능, 예선 종료 후 본선 시작전 1회 변경 가능하며, 이외의 출전 선수명단 교체는 불가하며, 이를 어기고 대회를 출전한 경우 부정선수로 적용된다.

② 제출서류 : 등록 선수 명단

4. 부상 선수 교체

① 대상 : 예선 시작 이후 선수 교체는 부상 선수에 한하여 가능하다.

② 제출서류 : 해단 선수명이 기입된 부상 증빙 서류(진단서 등)

③ 제출기한 : 경기일 기준 최소 2일전 전달

④ 부상으로 인해 교체한 선수는 상기 3조 1항을 제외한 기간중 재등록은 불가하다.

제6조 경기 규칙

모든 공식경기는 FIFA 및 KFA의 통상적인 경기규칙에 따라 실시되며, 특별한 사항이 발생 시에는 전국 학교스포츠클럽축구대회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 승자결정 방식

1. 예선은 전·후반 승부가 나지 않을 경우 무승부로 처리한다.

2. 결승까지 본선 토너먼트에서는 전·후반 승부가 나지 않을 경우 승부차기

(Penalty Shoot Out)로 승자를 결정한다. 플레이오프 진행시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8조 승점

본 대회의 승점은 승리팀 3점, 무승부 1점, 패배팀 0점을 부여한다.

제9조 순위결정

1. 조별 예선 순위는 승점➡득실차➡다득점➡다승➡승자승➡추첨 순으로 결정

제10조 출전 자격

1. 승인을 받은 선수만이 공식경기에 출전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2. 앞 항에 의거 구단에 등록을 완료하고 출전선수 명단에 등재된 자만이 공식경기에 출전할 자격을 가지며, 벤치에 착석할 수 있다. 경기 중 선수지도행위는 공식지도교사 1명만 할 수 있다.

3. 제재 중인 지도자(이하 지도교사)는 다음 항목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출전정지제재 중이거나 경기 중 퇴장 조치된 지도교사는 공식경기에서 관중석 착석만 가능하며, 경기 전 훈련 지도 및 경기 중 어떠한 지도(지시) 행위도 불가하다.

② 본 항 1호를 위반한 지도교사는 상벌규정에 의거하여 징계한다.

4. 경고, 퇴장, 상벌위원회 징계 등에 따라 출전이 정지된 선수, 지도교사의 출전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해당 학교에 있다.

제11조 선수단 안전

1. 대회에 참가하는 모든 선수는 참가팀에서 반드시 의료적인 확인을 거쳐야 하며, 팀은 신체에 이상이 없는 선수(심장 질환 및 호흡기 질환 등 의료학적 이상이 없는 선수)를 출전시켜야 한다. 만일 선수의 신체 이상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팀에서 모든 책임을 감수하여야 한다.
2. 참가팀은 선수 보호를 위한 보험 절차를 위해 반드시 학교장 내부 결제를 득한 후 대회에 참가하여야 하며, 각 팀은 필요에 따른 기타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3. 참가팀은 대회참가 시(경기 출전 시) 소속 선수들의 안전을 위해 경기출전 전에 반드시 건강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12조 의료진

본 대회를 진행하는 장소에 주관사가 준비한 구급차와 구급요원을 배치하여 운영한다.

제13조 출전선수명단 제출 의무

1. 경기에 참가하는 학교는 경기개시 30분 전까지 경기감독관에게 출전선수명단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출전선수명단에는 출전 선수, 지도교사, 유니폼 등번호가 포함되어야 하며, 제출된 인원만이 해당 공식경기 출전과 선수 지도가 가능하다.
3. 출전선수명단 승인(경기감독관 서명) 후 선수 교체는 제 14조에 따른다.
4. 순연 경기 및 재경기의 출전선수명단은 다시 제출해야 한다.

제14조 선수교체

1. 본 대회의 선수 교체는 경기감독관이 승인한 출전선수명단에 의해 후보선수 내에서 5명 가능하다.
2. 선수교체는 제출한 교체 명단 7명에 한하여 교체가 가능하며, 재교체는 불가능하다.
3. 선수교체는 반드시 경기 감독관 또는 대기실에 사전 검인을 받고 주심의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한다.

제15조 유니폼 및 장비

1. 모든 공식경기에서는 반드시 유니폼을 착용하여야 하며, 반드시 스타킹 색상을 통일하여 착용한다.
2. 상기 1항의 유니폼에는 출전선수명단에 기재되어 있는 선수번호(1~99번에 한하며 번호는 중복할 수 없음)와 일치한 배번이 유니폼 색상과 구분되어 명확하게 식별이 가능하도록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출전선수의 유니폼 번호는 반드시 최초출전선수명단 제출 시 기재된 번호와 동일해야 출전이 가능하다.
3. 팀 주장은 주장인 것을 명확하게 표시하는 완장(암 밴드)를 착용 하여야 한다.
4. 공식경기 전 구단(경기감독관) 및 상대 학교와 유니폼 착용 색상 관련하여 사전 조율하여 유사한 색상의 유니폼일 경우 원정 학교가 조끼를 착용하는 것으로 한다. 모든 학교는 반드시 유니폼 색상과 다른 조끼 색상을 준비하여 대회에 참가한다.(대기 선수 착용)
5. 선수는 신체보호를 위해 반드시 정강이 보호대를 착용하고 경기에 임해야 한다.

6. 단 학교체육복을 착용한 팀은 팀조끼를 착용하며, 팀조끼에 출전선수 명단과 동일한 등번호가 기입되어 있어야 한다.
7. 고무창이나 우레탄창으로 제작된 축구화 등 심판진의 확인을 받은 장비로만 출전이 가능하며, 유리 및 금속재질로 제작된 안경테를 착용한 선수는 출전이 금지된다. 단 보호안경을 착용한 선수는 심판진의 승인하에 경기에 참여가 가능하다.
8. 이외에 선수에게 부상을 입힐만한 물품(반지, 팔찌, 귀걸이 등), 주판사 및 심판진 판단하에 경기에 지장을 줄 장비를 착용한 경우 착용을 금지할 수 있다.

제16조 경기일정 준수

학교는 정해져 있는 공식경기 개최일, 킥오프 시간 및 개최지 등의 경기일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7조 경기시간

1. 본 대회 경기시간은 전·후반 각 25분이며, 하프타임은 10분이다. 양 팀 출전선수는 후반전 출전을 위해 후반전 개시 1분전(하프타임 9분)까지 그라운드에 대기해야 한다.
2. 학교는 경기 시작 시간 또는 하프타임 종료 시간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예정된 경기 시작 또는 재개 시간이 1분 이상 지연될 경우, 아래 각 호에 따라 해당 학교에 승점 삭감을 부과할 수 있다.
 - ① 1회 미준수 시 : 경고
 - ② 2회 미준수 시 : 승점 1점 삭감
 - ③ 3회 이상 미준수 시 : 승점 1점 삭감 및 상벌위원회 제소
3. 경기에 참가하는 학교는 경기시작 30분전에 경기장에 도착하여야 한다.
 - ① 어느 한 팀이 경기시작 30분전까지 경기장에 도착하지 못할 경우, 해당 팀은 주판사측에 그 사유와 도착예정 시간을 통보하여야 하며, 경기감독관과 주판사는 경기시간 변경 유무를 심판 및 양 팀 대표자와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 ② 어느 한 팀이 경기시작 시각까지 경기장에 도착하지 않는 경우, 상대팀은 15분간 대기할 의무가 있다. 15분간 대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팀이 도착하지 않을 경우, 제22조 1항에 의한다.
 - ③ 경기중지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귀책사유가 있는 학교에 있다.
 - ④ 홈/원정팀은 경기개최지로의 이동 정보를 사전에 숙지할 책임이 있으며, 상황에 따른 추가 이동시간이 필요한지 확인해야 한다. 만일, 팀의 도착 지연으로 킥오프가 지연될 경우, 상기 2항에 따라 귀책사유가 있는 학교에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

제18조 경기관계자 미팅

1. 경기시작 30분전 해당 경기의 경기감독관, 주심, 양팀 지도교사가 참석하여 실시한다.
2.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① 경기와 관련한 주요방침
 - ② 판정 가이드라인 등 심판판정에 관한 사항
 - ③ 기타 해당경기 특이사항 공유
 - ④ 출전선수명단 제출

제19조 영상 녹화 기기 사용

1. 전력분석 정보를 활용하기 위한 용도로 영상 녹화 가능 기기(스마트폰, 카메라, 캠코더 등)를 사용할 수 있으며, 경기 영상 녹화 외의 기능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2. 해당 기기를 통해 녹화된 영상으로 경기 내 판정에 대한 재소는 불허한다. 단, 부정 선수 출전 등의 경우는 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3. 드론 등 경기 진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안전에 위험이 된다고 판단하는 기기는 사용할 수 없다.
4. 허가되지 않은 기기를 사용하거나, 기기를 이용해 경기중 판정항의시 퇴장된다.

제20조 리그 중단 및 경기중지 결정

1. 전염병, 천재지변 등 구단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불가항력적 상황 발생시 주최/주관사의 판단에 의해 당해연도 리그를 중단할 수 있다.
2. 경기 전 또는 경기 중 중대한 불상사 등으로 경기를 계속하기 어려운 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 주심은 경기감독관에게 경기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경기감독관은 동 요청에 의거하여 홈 학교 및 원정 학교 관계자의 의견을 참고한 후 경기 중지를 결정할 수 있다.
3. 상기 2항의 경우 또는 경기장의 질서 유지가 어려운 경우, 경기감독관은 주심의 경기중지 요청이 없더라도 경기 중지를 결정할 수 있다.
4. 경기가 전반전에 중지된 경우 제21조 3항에 따라 재경기를 실시하며, 후반전에 양 팀의 득실차가 있을 시 중지된 경우 종료 시점의 경기결과를 최종 결과로 한다.
5. 경기감독관은 경기중지 결정을 내린 후, 그 사유를 주최측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기 취소·중지 및 재경기

1. 공식경기가 부득이한 사유로 취소·중지된 경우, 주관사에서 지정한 일자에 재경기를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재경기 방식에 대해서는 다음의 각 호에 의한다.
 - ① 이전 경기에서 양 팀의 득실차가 없을 때는 50분간 재경기를 실시한다.
 - ② 이전 경기에서 양 팀의 득실차가 있을 때는 중지 시점에서부터 잔여 시간만의 재경기를 실시한다.
3. 재경기시, 상기 2항 1호의 경우 이전 경기에서 발생된 경고, 퇴장 기록만이 인정되며 선수교체는 팀당 허용하는 최대 인원수까지 가능하다. 상기 2항 2호의 경우 이전 경기에서 발생된 모든 기록이 인정되며 선수교체 인원 수 역시 이전 경기의 중지시점까지 사용한 횟수를 차감하여 남은 횟수만 사용할 수 있다.
5. 재경기 시, 이전 경기에서 발생된 경고 및 퇴장은 유효하며, 경고 및 퇴장에 대한 처벌(징계)은 경기순서대로 연계 적용한다.

제22조 패배로 간주되는 경우

1. 경기 진행거부 또는 속행 거부 등 어느 한 학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공식경기가 개최불능 또는 중지(중단)되었을 경우 그 귀책사유가 있는 학교가 0:3 패배한 것으로 간주한다.
2. 공식경기에 무자격선수가 출장한 것이 경기 후 발각되어 경기종료 후 72시간 이내에 상대 학교로부터 이의가 제기된 경우, 주최/주관사에서 무자격선수 출전이 발각된 경우, 무자격선수가 출장한 학교가 0:3 패배한 것으로 간주하며, 상벌위원회에 회부 될 수 있다.

3. 앞 1항, 2항에 따라 어느 한 학교가 0:3 패배를 결정한 경우에도 양 학교 선수의 개인기록(출장, 경고, 퇴장, 득점, 등)은 그대로 인정한다.

4. 앞 2항의 무자격선수는 미등록 선수, 경고누적 또는 퇴장으로 인하여 출전이 정지된 선수, 상벌위원회 징계를 위반한 선수 등 그 시점에서 경기출전 자격이 없는 모든 선수를 의미한다.

제23조 대회 중 잔여경기 포기

대회 중 잔여 경기를 포기하는 경우, 다음의 각 항에 의한다.

1. 각 조별 예선 경기 수의 3분의 2 이상을 수행하였을 경우, 지난 경기 결과를 그대로 인정하고, 잔여 경기는 포기한 학교가 0:3 패배한 것으로 간주한다.

2. 각 조별 예선 경기 수의 3분의 2 이상을 수행하지 못했을 경우, 포기한 학교와의 경기 결과를 모두 무효 처리한다.

3. 본선 토너먼트 출전을 포기하는 경우 조별 예선 차등팀에게 출전권이 부여되며, 차등팀이 예선 잔여 경기를 포기한 팀인 경우 출전권 대체 부여되는 팀 없이 진행된다.

4. 최초 토너먼트 다음 라운드에서 잔여경기 포기의 경우 포기한 학교가 0:으로 패배한 것으로 간주한다.

5. 특정 사유 없이 잔여 경기를 포기 또는 무단 별참한 학교는 차년도 하이스타리그에 참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제24조 팀, 지도교사 및 선수에 대한 제재

1. 경고 및 퇴장조치에 따른 제재

① 1경기 경고 2회로 퇴장의 경우 다음 1경기가 출전 정지되며, 이 경고는 누적에 산입되지 않는다.

② 직접 퇴장의 경우 다음 2경기가 출전 정지된다.

③ 경기 중 경고 1회를 받은 선수가 경고 없이 바로 퇴장을 당할 경우, 다음 1경기 출전정지 및 당초에 받은 경고는 그대로 누적된다.

④ 전 경기에서 경고 1회를 받은 선수가 다른 경기에서 경고 2회로 퇴장 당했을 경우 다음 1경기 출전정지 및 퇴장 당시 받은 경고 2회는 경고 누적 횟수에 적용되지 않으며, 이전 경기의 경고 1회는 유효하다.

⑤ 선수 및 지도교사는 처음 3회, 이후 2회의 경고누적 시 다음 1경기가 출전정지 된다.

⑥ 본 대회에서 받은 경고, 퇴장(경고 2회 퇴장, 직접 퇴장, 경고1회 후 직접 퇴장), 징계사항에 의한 출전정지는 본선까지 연계 적용한다.

2. 경기 후에라도 퇴장 및 심각한 반칙 등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구단은 해당 선수 및 지도교사에 대해 추가로 경기 출전금지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3. 경기 중 선수들을 터치라인 근처로 불러 모아 경기를 중단시키는 지도교사는 퇴장 조치하고, 잔여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4. 주심의 허락 없이 경기장에 무단 입장하거나, 질서 위반 행위를 한 지도교사와 선수는 즉시 퇴장 조치하고 잔여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5. 경기 중 심판판정 또는 기타 사유를 이유로 하여 집단으로 경기장 이탈, 지연, 경기에 불응하였을 경우, 주최/주관사 측(또는 경기감독관 등)으로부터 공식 경기재개 통보를 받은 후 3분 이내에 경기를 재개하지 않을 경우 경기포기(기권)로 간주하며, 상벌위원회에 회부한다.

6. 참가 등록된 지도교사 외 인원이 심판 판정 등 대회 운영에 항의하는 경우, 1회 발생 시

경고, 2회 발생 시 승점 1점 감점의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

7. 기타 불미스러운 행위 및 위반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주최/주관사에서 판단하여 상별위원회에 회부한다.

8. 상별위원회 징계로 인한 출전정지는 시즌 및 대회에 관계없이 연계 적용한다.

9. 경고, 퇴장, 상별위원회 징계 등에 따라 출전이 정지된 선수, 지도 교사의 출전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해당 학교에 있다.

제25조 제소

1. 규정 위반, 경기 중 불미스러운 행위 등 경기와 관련한 제소는 육하원칙에 의해 팀 대표자(교장) 명의의 공문과 관련 근거서류(자료)를 첨부하여 주최 측에 제출해야 한다.

2. 제소는 해당경기 종료 후 72시간 이내에 하여야 하며, 경기 중의 제소는 허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심판판정에 대한 제소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4. 사실무근으로 제소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상별위원회에 회부된다.

제26조 상벌

1. 목적 : 회의 징계와 포상의 적정한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대상

① 대회에 등록된 학교

② 대회 참가 지도교사 및 선수

3. 구성 / 운영

① 징계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구단에 상별위원회를 둔다.

② 상별위원회는 대회 임원중 5인의 대회 상별위원회를 구성한다.

4. 상별위원회 소집

상별위원회는 2인 이상의 상별위원 소집 요청, 징계 제소 접수에 따라 상별위원장이 소집한다.

5. 징계의 대상별 종류

① 참가팀에 대한 징계

1) 자격정지 : 금번 대회 및 차년도 대회 출전 불가

2) 승점감점

3) 경고

② 개인에 대한 징계 : 지도교사, 선수

1) 제명 : 금번 대회 및 차년도 대회 출전 불가

2) 출장정지

3) 경고

③ 징계 내용은 차년도까지 연계 적용할 수 있다.

제27조 기타사항

각 학교는 아래의 사항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1. 2026년 교육감배 하이스타리그 우승팀은 전국 학교스포츠클럽 축구대회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부상은 인천유나이티드 프로축구단에서 후원해주는 부상을 얻을 자격이 주어진다.
2. 시상식에는 주최측이 지정한 학교(팀)와 수상 후보자가 반드시 참석하여야 한다.
3. 경기 중, 교체대상 선수의 워밍업은 사전에 지정한 장소에서 실시해야 한다.
4. 경기감독관은 하절기(6~8월) 기간 중, 쿨링 브레이크 제도(워터 타임)의 실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감독관은 경기시작 15분 전, 기온을 측정해 32도(섭씨) 이상일 경우, 심판진과 협의해 실시할 수 있다.
5. 해당 대회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본 회 경기규정과 심판규정 및 상벌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기로 한다. 또한 전국 학교스포츠클럽축구대회 규정을 준용한다.